

#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

(김동욱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249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11. 9.

발 의 자 : 김동욱 의원(1명)

찬 성 자 : 이현찬, 김경자(양천),  
김인제, 문상모, 유찬종,  
유 용, 유동균, 김제리,  
김진철, 박기열, 김혜련,  
이윤희, 장인홍, 박호근,  
이정훈, 조상호, 김동윤,  
오경환, 김태수, 한명희,  
전철수, 장우윤 의원(22명)

## 1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의 학생자살은 2011년 이후 격년주기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고 자살의 원인도 가정문제, 우울증, 학업문제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Wee 프로젝트 사업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음.

따라서 자살위험이 있는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, 학생 발달단계에 따른 맞춤형 자살예방 정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성장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(제3조).

- 나. 학생자살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제4조).
- 다. 학생 자살예방교육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·시행의 효율적 지원을 한 생명존중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제5조).
- 라. 실태조사(제6조)
- 마. 자살학생·자살미수학생 및 이들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(제9조)
- 바. 학생 자살예방 및 보호업무와 관련하여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함(제11조)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
- 다. 기 타 :

##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에 따라 학생 발달단계에 맞는 맞춤형 자살예방 정책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학생”이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.
2. “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”이란 자살의 위해성을 알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서, 성장하는 학생에게 육체적·정신적 건강의 보호·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.

제3조(교육감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학생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환경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을 학교교육과정으로 편성·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교육감은 자살징후 조기발견,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지역사회 전문기관과의 연계·치료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.

제4조(학생자살 예방계획 등) ① 교육감은 매년 학생자살 예방계획(이하 “예방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한다.

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.

1. 학생자살 현황 분석
2. 학생 자살예방을 위한 대책

3. 학생 자살예방을 위한 위기관리 체계 구축
  4. 유관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
  5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③ 교육감은 매년 예방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,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방계획에 반영한다.

**제5조(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)** ①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교육과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·시행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생명존중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에게 자문한다.
1. 제4조의 예방계획 수립·시행
  2.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의 운영 성과와 과제
  3. 학생 자살예방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
  4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③ 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**제6조(실태조사)**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자살예방교육과 생명존중교육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-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.

**제7조(학생 자살예방기관의 지정·운영)** 교육감은 학생자살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생 자살예방기관을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
**제8조(학생자살예방 담당 교사 교육)** ①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교육 담당 교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등에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- ② 학교장은 학생자살예방 교육담당 교사를 지정할 수 있다.

제9조(가족 등에 대한 지원) ① 학교장은 자살학생·자살미수학생 및 이들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학교장은 학생 자살예방 대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자살학생·자살미수학생과 이들의 가족 등에게 생활의 평온이 유지되도록 배려해야 한다.

제10조(예산의 지원) 교육감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1조(비밀준수의 의무) 학생 자살예방 및 보호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제4조(학생자살 예방계획 등)에 따라 교육감은 학생자살 예방계획을 수립·시행함에 따른 비용 발생
- 같은 조례안 제5조(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)에 따라 생명존중위원회의 구성·운영 비용 발생
- 같은 조례안 제6조(실태조사)에 따라 자살예방교육과 생명존중교육을 위한 실태 조사를 실시함에 따른 비용 발생
- 같은 조례안 제7조(학생 자살예방기관의 지정·운영)에 따라 학생 자살예방기관을 지정·운영함에 따른 비용 발생
- 같은 조례안 제8조(학생자살예방 담당 교사 교육)에 따라 학생 자살예방교육 담당 교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에 따른 비용 발생
- 같은 조례안 제9조(가족 등에 대한 지원)에 따라 자살학생·자살미수학생 및 이들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른 비용 발생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## 3. 미첨부 사유

가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(제3조제1항제1호)

나. 추계결과 ≙ 859,900천원

- 예상되는 비용이 5년동안 859,900천원으로 연평균 171,980천원임
- 추계의 전제
  - 안 제4조에 따른 학생자살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기 추진하고 있는 ‘정신건강관리 사업’에서 학생자살예방 관련 지원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어 비용추계에서 제외(첨부자료1 첨부)
  - 안 제5조에 따른 생명존중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를 가정(연간 총 4회 기준)하고, 위원회의 구성 위원 10명 중 1명은 교육청 소속 공무원, 9명은 외



○  $\sum_{i=1}^5$ (생명존중위원회운영비)<sub>i</sub> = 22,000천원

- 연간 생명존중위원회 운영비 : 4,400천원

· 위원회 참석수당 : 100,000원 × 9명 × 년 4회 = 3,600천원

※ ‘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위원회 참석수당’에 따른 기본료 10만원을 준용하고, 교육청 소속 공무원 1명은 참석수당 지급 인원에서 제외

· 업무추진경비 : 20,000원 × 10명 × 년 4회 = 800천원

※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회의에 따른 업무추진경비는 1인당 20천원을 준용하여 추계

○  $\sum_{i=1}^5$ (가족등에대한지원비용)<sub>i</sub> = 837,900천원

- 연간 자살학생·자살미수학생의 본인과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비용 : 167,580천원

· 민간이전		167,580	천원
- 상담 및 심리치료	1,156,000원 × 120건 =	138,720	천원
- 자문위원회 운영경비	2,390,000원 × 6회 =	14,340	천원
- 법률 및 의료 자문	330,000원 × 24회 =	7,920	천원
- 상담지원제도 홍보	1,650,000원 × 4회 =	6,600	천원

※ 서울시교육청에서 기 추진하고 있는 유사사업인 ‘학교안전사고피해자상담및심리치료’예산을 준용하여 작성

#### 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     예산정책담당관

담    당    관      남승우

사업평가팀장      황훈

분석관              원동아

☎ 02-3705-1285

e-mail : dongya1@seoul.go.kr